



즉시 배포용: 2023년 11월 2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패키지에 서명

특정 주 직원 생존자를 위한 주 의료 혜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S.5495/A.6806

*주 내 비경쟁직 또는 노동 계급 직위의 폐지 또는 축소의 경우 직원을 보호하는
S.5487/A.6856*

*고용주에게 교섭 부서 직원의 집 주소를 직원 조직에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S.6477/A.7157*

판정 수령 시 공공 고용주와 직원 간의 중재 허점을 해소하는 S.6491/A.6866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공공 부문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이미 미국 최고의 보호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뉴욕주 및 지방 정부가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 나은 성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패키지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의 일환으로 주 및 지역 공공 부문 인력을 재건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올해 초 발표된](#) 변경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노동자들은 강력한 보호와 좋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뉴욕에서 노동력이 강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법안 S.5495/A.6806은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피부양자가 우발적 장애 또는 직무 수행 장애 연금을 받고 은퇴한 전직 주 또는 정부 기관 직원이 사망한 후에도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뉴욕주 건강 보험 플랜에서는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최소 10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특정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근속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자의 배우자와 피부양자가 그러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안 S.5487/A.6856은 경쟁 계층 직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일치하는 인력 감축의 경우 경쟁 계층 외부의 직원에 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주 및 지방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경쟁적, 비경쟁적, 노동적 관할권 분류로 영구 임명된 직원에 대해 공무원법에 동등한 감원 및 리콜 조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S.6477/A.7157은 공공 부문 고용주가 직원 조직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현행법의 주소 참조와 혼동이 없어지고, 노조가 직장 밖에서 해당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교섭 단위에 있는 직원의 집 주소를 부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Stacey Pheffer Ama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를 계속 운영하는 훌륭한 공무원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법률을 통해 우리는 그 약속을 확고히 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하거나, 직무를 잃은 근로자에게 기회를 보장하거나, 노동 조합에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이점을 보고 법률로 서명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안 **S.6491/A.6866**은 판정 수령 후 90일 이내에 당사자가 판정 수정 또는 철회 신청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공 고용주와 직원 간의 중재에 대한 이러한 허점을 해소합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중재 대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이 보다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승소하지 못한 당사자는 90일 이내에 판결을 준수할 것인지 또는 판결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취소/변경 신청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이전 법에서는 상대방이 판정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 90일 이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Brad Hoylman-Sigal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은 노동자 입장을 지지합니다. 공공 부문 노조가 이미 중재에서 이겼을 때 더 이상 법적 허점으로 인한 지연이나 비용 부담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가 Lavine 하원의원과 함께 당사자들이 90일 이내에 중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의 공공 부문 중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Charles Lavin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송 종결을 위해 불필요한 법원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성공적인 당사자들의 노동 및 고용 중재 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듭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고 법적 허점을 메워준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CSEA 의장인 **Mary E. Sulliv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선하는 여러 법안에 서명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CSEA** 회원들과 연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원과 공무원에 대한 존중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 주의 많은 공무원들에게 의미 있는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공무원 연맹(NYS Public Employees Federation)의 Wayne Spenc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공무원 연맹의 50,000명 회원을 대신하여 주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러한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의 방치 끝에 주지사가 노동당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정부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